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7년 11월 13일
- 나. 발의자 : 박미영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제5조)
-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구민 행동요령 안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원인¹⁾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배출의 경우 대도시에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며, 국외영향은 평시에는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요 선진국 및 WHO 등 국제적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유발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1) 출처: 환경부-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도시대기 측정소별 월평균 대기오염도 (2017년 8월)]

구분	미세먼지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mu\text{g}/\text{m}^3$]	이산화질소 (ppm)	오존 (ppm)	아황산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월평균	21	13	0.021	0.024	0.004	0.4
영등포구	26	13	0.025	0.029	0.004	0.5

※ 출처: 서울시 2017년 8월 서울 대기질 분석 결과 (영등포구 미세먼지 오염도 25개구 중 1위)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일

발의자 : 박미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3조)

나.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4조 ~ 제5조)

다.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안 제6조)

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7. 11. 8. ~ 11.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6.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

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의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그 밖에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예보내용		등급 ($\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